

제 2396호
2015. 09. 23.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장 운 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5-78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2
- 공 고
제2015-664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신규 설치 행정예고 3
제2015-665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복자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7
제2015-672호: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차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제2015-676호: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78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연

- 아 래 -

대상시설			해제사유	위험 등급	비 고 (재난위험시설 지정일)
시 설 명	위 치	관리주체			
강호호, 김길수 건물	남대문로5가 209번지	아시아신탁(주) (주)피티에스지피 에프브이	철거에 따른 위험요인 해소	D	2008.08.05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64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신규 설치 행정예고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 조성을 위해 설치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의 신규 설치위치 등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신규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 조성을 위해 음성안내와 영상녹화가 가능한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를 상습무단투기지역에 신규 설치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개인정보보호를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 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5. 9. 24. ~ 10. 13. (20일간)

5. 신규 설치예정 위치

연 번	동명	설치장소	비고
1	소공동	중구 세종대로 64 (JS텍사스) 앞	
2	회현동	중구 퇴계로4길 49 남대문게스트하우스 앞 통신주	
3	회현동	중구 퇴계로6길 47 앞 전신주	
4	명 동	중구 퇴계로24길 14 한전 옆 한우마루	
5	명 동	중구 삼일대로8길 5 조양빌딩 주차장 후문	
6	필 동	중구 퇴계로36길 32	

7	장충동	중구 장충단로4길 28-21 대광빌라 전봇대	
8	장충동	중구 장충단로4길 38 옆 전봇대	
9	광희동	중구 을지로42길 11 (유성장모텔) 앞	
10	광희동	중구 퇴계로39길 19 (금성사) 앞	
11	광희동	중구 퇴계로52길 12 (중구자원봉사센터) 앞	
12	을지로동	중구 을지로27길 2 (중앙아파트) 앞	
13	을지로동	중구 을지로27가길 24(을지어린이집) 앞	
14	신당동	중구 다산로39길 32	
15	신당동	중구 퇴계로409 우리은행 옆 이면도로	
16	다산동	중구 동호로11길 74 푸른마을11차 앞 (신당동353-58)	
17	다산동	중구 동호로11마길 20-4(묘각사) 입구 전산주	신당동432-503
18	청구동	중구 청구로1길 39 (청구아파트) 옆	
19	청구동	중구 다산로14길 18 (시온헤어) 앞	
20	신당5동	중구 퇴계로88가길 14	
21	신당5동	중구 퇴계로90길 73	
22	신당5동	중구 퇴계로88길 36	
23	동화동	중구 다산로42나길 46 파라다이스(아) 측면 담장 옆	
24	동화동	중구 청구로6길 58 맥슨빌딩 앞	
25	항학동	중구 퇴계로83길 40-11	
26	항학동	중구 퇴계로83길 22-33	

6. 의견제출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신규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 10. 1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및 해당 등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신규 설치위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붙임 주민의견서 제출서식 작성 제출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중구청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3396-5484)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65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릴 필요를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15년 7월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
계 개편 등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근거 마련 및 용어 전반 재정립(안 제1조 등)
-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개정(안 제2조)
-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조항 개정·신설(안 제3·4조)
- 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마. 위원장 연임제한 조항 신설(안 제8조제1항)
-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0조)
- 사.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조항 신설(안 제11조제2항)
- 아.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조항 신설(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
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복지지원과장, 전화 : 3396-5317, FAX : 3396-8723, E-mail :
shwpdls@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이외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복지지원과(☎3396-531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 위원을 2/3 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청장·복지환경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바영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바영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 ⑥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인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인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2/3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팀장, 방문보건팀장, 실무 분과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각 1명을 호선한다.
-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자원체제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동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상벌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자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자립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4. 「바야흐로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바야흐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⑤ 동 협의회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 ⑥ 공무원인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⑦ 위원장은 전 동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 ⑧ 동 협의회는 동 업무추진에 지문 및 심의를 위해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전문 지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⑨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⑩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 동 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각 협의체 위원장과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약체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약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약체 및 동 협약체 위원 중심의 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인간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인간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인간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이 해당인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간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약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약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약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각 협약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③ 각 협약체 위원장은 해당 협약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⑤ 대표협약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약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약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약체 회의결과를 대표협약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약체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약체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약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약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

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칙)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72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관련 법조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률의 조례 위임근거 조항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 「하수도법」의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항이 “제80조제3항”에서 “제80조제4항”으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안 제4조제2항)
-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 정비
 - 「하수도법」에 수수료의 가산금에 대한 위임사항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안 제11조)하고, 수수료의 가산금 관련 문구를 삭제(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환경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중구청), 문의전화:3396-5612, FAX:3396-8761, 메일: mhsky@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법 제80조제3항”을 “법 제80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을 “제9조에 따른 수수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통지)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통지) ② ----- ----- ----- ----- 법 제80조제4항에 ----- ----- -----.
제11조(수수료의 가산금) <u>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u>	제11조 <삭제>
제12조(수수료의 강제징수) <u>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u>	제12조(수수료의 강제징수) <u>제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u>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76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1. 폐지이유**

○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금연이행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존치 의미가 없음.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건강도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 문의전화 : 3396-6324, FAX : 3396-8884, 메일 : lazy111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

1997.5.12 규칙 제242호

개정 1998.6.8 규칙 제256호

개정 1999.11.3 규칙 제308호

개정 2002.12.31 규칙 제387호

(일부개정) 2004.09.24 규칙 제41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권자)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 및 처분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위법행위조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위반 사실의 적발, 인지, 확인(별지 제1호서식)이 있어야 한다.

제5조(삭제) (1998.06.08)

제6조(처분통지)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중구재무회계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별지 제3호서식)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고지서 포함) 등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제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과태료 고지서에는 납입 개시일5일전에 처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납부등) 분임징수관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수납부(또는 체납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체납독촉) ①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체납 확인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중구구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이의신청)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제기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이의제기 법원 통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이의사에는 부과 철회(취소) 후 담당 공무원의 의견 첨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관할법원에통보한다.

제12조(지방재세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중구구세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6.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4.09.24)

이 규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